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08

발의연월일: 2020. 6. 22.

발 의 자:위성곤·이개호·서영교

홍문표・서삼석・윤재갑

이상직ㆍ허 영ㆍ박 정

이해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직전 연도의 재화·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 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여 기장능력이 부족한 개인사업자가 간편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며, 이 중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1999년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기준금액이 사실상 인하된 것으로서,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하여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간이과세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, 납부의무 면제대상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 납세협력 비용을 경감하고자 함(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4천800만원"을 "1억 2천만원" 으로 한다.

제69조제1항 본문 중 "3천만원"을 "4천800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) 제61조제1항 및 제69 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 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1조(간이과세의 적용 범위) ①	제61조(간이과세의 적용 범위) ①
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	
급에 대한 대가(부가가치세가	
포함된 대가를 말하며, 이하	
"공급대가"라 한다)의 합계액이	
<u>4천800만원</u> 이상 같은 금액의	<u>1억 2천만원</u>
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	
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	
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	
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	
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	
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	
받는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	
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	
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69조(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	제69조(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
의무의 면제) ① 간이과세자의	의무의 면제) ①
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	
가의 합계액이 <u>3천만원</u> 미만이	<u>4천800만원</u>
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	

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	
의무를 면제한다. 다만, 제64조	
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	
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